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60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8.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혐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2.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3.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 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본교 교직원, 대학(원)생 및 그 밖의 허가 받은 사람 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교직원, 대학(원)생 및 그 밖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교내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또는 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승인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
 - 2. 실험동물의 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 의가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2.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 는 사람
-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5.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다.
- ④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정 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⑦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총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충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가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지도·감독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동물실 험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4.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6. 그 밖에 윤리적 동물실험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장과 혐의하여 정하는 방법
- 제9조(동물실험의 심의·승인 방법) ①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② 위원은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및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이 평가한 종합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심의·의결 한다.
 - ③ 위원장은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고,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승인서를 발급한다.
 - ④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 승인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 실험동물을 사고 동물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검할 수 있으며,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동물실험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 ⑦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통지) ①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열람)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훔쳐 써서는 안 된다.
-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460호, 2018.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7항 관련) <제정 2018.12.31.>

서 약 서

소 직	속 및 위				
성	명		યો 1ને દી દી		
한	지	-	생 년 월 일		
주 경	요 럭				
주	소	사무실			
_	3.	자택			
연	락 처	전화번호(사)	이동전화		
선	딕 시	E-mail	FAX		

위 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제1항 관련) <제정 2018.12.31.>

동물실험시설 점검표

시설	예	아니오	비고
1 분리·구획된 사육실, 폐기물보관실을 갖추었는가?			
2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3 동물의 종류별로 분리된 사육실을 갖추었는가?			
4 사육실의 바닥과 벽이 소독이나 청소가 편리한 마감재			
인가?			
5 폐기물보관실에는 동물사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6 동물부검 또는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실험실을 갖추었			
는가?			
7 실험실에는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에 적합한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실험실을 갖춘 경우에 해당)			
8 사료, 깔짚, 사육용품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장소를			
갖추었는가?			
9 실험동물의 검역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10 질병이 있는 동물을 격리,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분리된 구역이 있는가?			
11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는 적절하게 교환, 세척,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12 실험실에는 시험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l	L
종 합 의 견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형	ŀ						심의번호:			
	과 제 명		문)								
	শ শ ভ	(영	문)								
	실험 제목										
	실험 기간	위	원회 승인	일 이	후 ~	년 월		일 (총	일/주/개	월)	
	실험구분		신규			□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Ī			성 명			소속			직 위		
	연구책임기	, -	 연락처			휴대폰			E-mail		
	원무색됨/		 전공/학위			교육이수		 기관자체교육(일기	아: , c	 수번호:)
			신 5 /박위			<u>파</u> 퓩이구		정부주관교육(일기		기수번호: 	
			성 명			소속			직 위		
	동물실험 수 [†] (1)	행자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기관자체교육(일기 정부주관교육(일기	. ,	이수번호: 이수번호:	
			성 명			소 속			직 위		
	동물실험 수학	행자	연락처			휴대폰			E-mail		
	(2)		 전공/학위			교육이수		 기관자체교육(일기 정부주관교육(일기	. ,	니 기수번호: 기수번호:)
ı							Ш	정구구판교육(일/	۲۰ ,۰	기구먼오·	,
	실 동물	·종류	□ 마우:□ 토끼		랫드	미생물학적 등	급	□SPF □준SPF(Clean) 🗆	일반(Conv.)	□기타
	험	0 11	기니피그기타(-)	사육 희망 정	소	□ barrier구약	력 □ Semi 일반구역		ਰੈ □
	동 계	통				반 입 예 정	일	년	월	일	
	물	/수량	♂:	φ:		·동 물 구 입	-31				
	체중	/주령	gr	am/	주령	5 포 T 집	^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	록된 실험동	물공급업체이어이	ᅣ 합니다.

	생물학적 4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및 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약처에 사전 보고할 것)						
	□ 사용하	지 않음						
		위험군 분류						
	□ 사용함	병원체 분류 ' ' ' ' ' ' ' ' ' ' ' ' ' ' ' ' ' ' '						
2.	연구 및	실험개요						
	1. 연구목적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						
	2. 동물실험의 필요성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검토하	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검색사이트	□ PubMed □ Current Contents Connect □ 한국학술정보 □ 그 밖의 ()						
	Key words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4. 해당 동물(animal)과 중(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가능하면 동물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6. 실험방법 (프로토콜) 개요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 (시험물질, 대조물질,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등)
- 샘플 채취에 관한 내용 (혈액, 뇨, 조직 등)
w HAAL에 되면 AA기회 이 기쇄되는 웹이 ~ 레스 네이 (런 이렇게 A 크 H리회)
※ 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필요 사유 (단 원칙적으로 불허함)

7. 4	7.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8. 등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교통등급 A: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교통등급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교통등급 C: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고통등급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교통등급 D: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고통등급 E: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9번에 사유 기재						
9. 3	교통동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중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마퀴제·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그 밖의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10.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인노석 충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석 상 진정·진동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상세 사유 기재)						

11.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증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증의 10%를 초과하는 중앙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12. 악라사 방법

12. 안락사 방법			
□ 약제 (사용약물 : □ 그 밖의 () □ CO ₂ 가스	□ 경추탈골)	
* 사체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	사체 처리 업체명)		

13. 실험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Reduction-동물 수 축소, Replacement-동물실험의 대체, Refinement-실험방법의 개선)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2. 「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3. 과제 승인 기간은 최대 1년임을 확인하였으며,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 경신청서를 통해 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 4. 연구책임자로서 본인을 포함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 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별지 제4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제정 2018.12.31.>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제목										
*1 7 7 0 0 0	소 .	속	성명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처			
연구책임자										
실험변경 내용	□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동물 종 □ 동물 사용 마리수의 증가 □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 진정·진통·마취 방법 □ 안락사방법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 그 외 실험방법 등 (변경사항 기입)						행자			
실험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수술방법										
동물종										
동물 사용수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진정·진통·마										
취방법										
안락사방법										
실험기간변경 /연장										
	성 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자										
그 외										

【별지 제5호 서식】(제9조제2항 관련) <제정 2018.12.31.>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 평가일시 20 .)	
()	기 접 수 번 호)					0 / 1	E 1	20	,	•
;	과 제 명									
	실험제목									
	실 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	심의평가기준									
1	동물실험계획의 목 □ 적합			7			및 사육조기 □ 부족		-	었음
2	실험자의 교육이수 및 □ 적합	는 훈련도경험도의] 적정성	8	" "		스트레스에	.,	하의 적절	성
3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 확인 □ 마확인						되는 경우, □ 부			
4	요구한 동물 종(계통, 등급)의 타당성 □ 적합 □ 부적합						되는 경우, 《 □ 부			
5	요구한 동물 마리 ⁼ □ 적합			10	_	. – -	시점 및 안락		의 적절성	
6	동물실험 방법(프		}	11	-	물구입처의 □ 적합	적절성 □ 부	적합		
6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				_		선에 대한 1			
평가	결과 및 의견									
결 과					9	의 견				
	□ 원안승인									
□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I							
	승인 거부	평가위원							(0	1)

【별지 제6호 서식】(제9조제3항 관련) <제정 2018.12.31.>

동물실험숭인서

과제구부	□ 신규
4세기 군	□ 계속

(괴 과	- 제 ~		드) 명	()			
교육	(연-	P) 책약	김자									
승	인	번	호								(접수번호:)
실	험	7]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가 항목에 따른 심의 결과		
1	동물실험	필요근거	□ 적합	□ 보완
2	동물실험	l의 대체방법 사용가능성	□ 확인	□ 미확인
3	동물실현	¹ 절차 및 동물관리	□ 적합	□ 보완
4	동물종류	- 및 계통 선택사유	□ 적합	□ 보완
5	동물수의] 적정성	□ 적합	□ 보완
6	동물의	인도적 처리기준	□ 적합	□ 보완
7	실험 중/	종료 시 동물의 고통 감소 방안	□ 적합	□ 보완
8	실험 중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 정도	□ 적합	□ 보완
9	실험물질	l이 동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고려	□ 비고려
10	그 밖의	「동물보호법」제24조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 해당 없음
10	<i>→</i> π ←	동물실험 실시자 및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 정도	□ 적합	□ 보완
	위원회 의 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제9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 의결과에 따라 위 과제의 동물실험을 숭인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7호 서식】(제9조제6항 관련) 〈제정 2018.12.31.〉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 기록표

동물	실험 과제명					
11.51	off all all and the					
실험	계획 숭인번호					
연구	책임자 성명					
- 11						
소사	자 성명/서명					
현장	조사 날짜					
신형	대상 동물종					
					확인된	
구 분	점검내역	Y	N	N/A	작 년년 사항 및 권고	해결 방안
	I. 동물실험계획서와 인력관리				_	
1	조사자가 기관 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과 동물사용 지침 등, 기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2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실험실 공간에 개정내역을 포함한 최신 버전의 전체 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3	연구책임자와 실험수행자가 연구수행을 위한 최신의 계획서와 수행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4	동물실험 수행자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수행자인가?					
5	실험수행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이수하였는가?(교육이수번호 유무)					
6	모든 직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등재 되어있는가?					
7	계획서에 사용 동물별 사육시설이 등재 되어 있는가?					
8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물사육시설이 계획서에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가?					
	Ⅱ. 연구과정	v).T	N/A	확인된	해결
	#. 현기 ~ T'ŏ	I	IA	TAN LT	적인인	예설

					사항 및 권고	방안
1	동물의 반입은 실험계획서의 승인 후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2	반입동물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검역실 체류기간과 관찰이 수행되었는가?					
3	동물실험계획 승인번호가 동물사육상에 부착된 카드의 번호와 일치하는가?					
4	동물실험 계획서에 언급한 동물사육 공간이 적합 한가?					
5	수행된 실험과정이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6	실험수행자가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훈련되어 있는가?					
7	승인된 계획서와 동물종, 계통, 연령, 동물의 수 및 구입처가 일치하는가?					
8	연구자/실험수행자는 적절한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갖추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가?					
9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10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화하고 있는가?					
11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 시 수의사의 조언(동물의 취급, 진정, 마취, 안락사, 수술 침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얻을 수 있는가?					
12	동물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가?					
13	동물관찰자 지정 및 인수인계 절차가 있었는가?					
14	주말과 휴일, 응급사태 시 관리가 가능한가?					
					l .	
	Ⅲ. 마취	Y	N	N/A	확인된 사항 및 권고	해결 방안
1	계획서에서 승인된 기법에 따라 대상 동물을 마취하고 있는가?					
2	동물이 적정 농도의 마취 준수 절차를 통해 의식이 없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는가?					
3	흡입마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잔류 위험 등을 고려한 치완 제거 관리를 하는가?					
4	흡입마취용 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고 매년 교정하는가?					
	Ⅳ. 수술	Y	N	N/A	확인된 사항 및 권고	해결 방안
1	수술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실험이 수행하는가?					
2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준비된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게 수행되는가?					
2	스스 자시가 깨끄친고 저도이 자 디이 이느가?					

4	생존수술을 위해 멸균된 기구, 멸균장갑, 수술용 마스크, 무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되는가?					
5	시술자는 마취와 수술,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는가?					
6	절개는 고통감소를 위해 적절하며 숭인된 계획서에 따라 봉합되어 있는가?					
7	수술진행 중 체온유지를 위해 온도 조절장치를 사용 하는가?					
8	멸균된 기구들은 사용전 적절하게 보관되는가?					
9	동물에 적합한 수술 회복실 및 지정 계류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가?					
10	실행절차에 따라 각 동물(사전 IACUC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 수행하는 주요 수술이 있고 식별 방법이 가능하도록 문서화되어 있는가?					
	V. 수술 및 처치 후 관리	Y	N	N/A	확인된 사항 및 권고	해결 방안
1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수술 후 관리가 진행되는가?					
2	투여된 진통제와 항생제 등의 복용량, 사용빈도, 투여 기간이 승인된 계획서와 일치하는가?					
3	수술/수술 후 절차 관리가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는가?					
4	봉합사 또는 봉합클립을 적절한 시기(약14일)에 제거하는가?					
5	수술과 관련하여 참여 수의사에게 통보한 문제가 있는가?					
	VI. 인도적 처리기준 및 고통감소 방안					
1	동물의 질병발생 시에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시행 하는가?					
2	이탈 및 위해요소 발생 시에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3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분류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4	실험중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 그 감소를 위한 진통·진경· 마취제의 적정사용이 고려되어 결정하였는가?					
5	장시간 신체적, 행동적 속박의 과학적 타당성이 검토되고 최소화 하고 있는가?					
6	실험결과 도출을 위한 가학적인 환경과 조치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가?					
	VII. 기록관리	Y	N	N/A	확인된 사항 및 권고	해결 방안
,						
1	최신에 그리고 완전한 외과적/절차의 기록일지가 있는가?					

3	완전하고 정확한 의료 및 수술 후 진행된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4	문서화된 약물/마취제/진통제를 정확하게 투여하고 기록하였는가?					
5	주사제, 혈액채취 및 유체 수거량 및 날짜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6	유효기간내의 봉합재료 등의 그 밖의 재료 항목은 관리 대장에 기록되는가?					
					•	
	V Ⅲ . 안락사	Y	N	N/A	확인된 사항 및 권고	해결 방안
1	승인된 계획서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2	사체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처리되는가?					
3	희생을 위하여 보증된 물리적/보조적 안락사 실행 방법이 수행되었는가?					
4	안락사 수행 후 사망확인을 하는가?					
5	안락사 방법과 처리용량 등이 해당동물의 계통에 적절 한가?					
					확인된	해결
	IX. 번식 및 사육	Y	N	N/A	사항 및 권고	배설 방안
1	IX. 번식 및 사육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Y	N	N/A		
1 2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2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					
3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 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					
3 4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 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 사육하는가?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					
3 4 5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 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 사육하는가?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 기록하는가?					
2 3 4 5 6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사육하는가?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기록하는가?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2 3 4 5 6 7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사육하는가?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기록하는가?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출입대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2 3 4 5 6 7 8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 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 사육하는가?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 기록하는가?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중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출입대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2 3 4 5 6 7 8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사육하는가? 항온ㆍ항습ㆍ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ㆍ기록하는가?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출입대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동물 종에 따른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가?					
2 3 4 5 6 7 8 9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사육하는가? 항은·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기록하는가?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출입대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동물 종에 따른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가? 사료는 유효기간 이전에 사용하거나 교체하는가? 사료와 깔짚은 오염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일반					
2 3 4 5 6 7 8 9 10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시설에서 번식사육하여 이용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에 따라유지하고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사육하는가?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기록하는가?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출입대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동물 중에 따른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가? 사료는 유효기간 이전에 사용하거나 교체하는가? 사료와 같짚은 오염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일반쓰레기 등과 격리하여 보관하는가?					

15 장기간 수행되는 실험동물에 enrichment가 고려되었는가?	16 질병 및 외부로 부터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가? □ □ X. 실험실과 부대시설 □ □ □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 □ □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 □ □ □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험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 □ □ □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 □ 7 클린벤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 □ 9 실험실(바다,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11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 □ □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 □ 있는가? □ □ □ □ □					
X. 실험실과 부대시설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험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취, 생취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X. 실험실과 부대시설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쥐, 생쥐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15	장기간 수행되는 실험동물에 enrichment가 고려되었는가?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16	질병 및 외부로 부터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가?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판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 <td< td=""><td>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td><td></td><td></td><td></td><td></td><td></td></td<>	1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1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험할 안전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1 있는가? (유효기간 등) 2 조사자와 직원이 실험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취, 생쥐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X. 실험실과 부대시설			
2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 □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 □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7 클린벤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 □	2 하고 있는가?(인수공통전염병, 알레르기, 위험물질 등) □ □ □ 3 사람, 동물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를 위협할 안전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 □ □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7 클린벤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으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 □	1				
3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 □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 □	3 문제나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 □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 □	2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쥐, 생쥐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쥐, 생쥐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있는가? □ □	3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 □ 7 클린벤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 □ □ □ 7 클린벤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4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수시로 갱신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 □ □ □ □ □ □ □ □ □ □ □ □ □ □ □ □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 □ □ □ □ □ □ □ □ □ □ □ □ □ □ □ □ □ □	5	눈(안구) 세척 설비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6	날카로운 저장용기나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 □ □ □ □ □ □ □ □ □ □ □ □ □ □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 □ □ □ □ □ □ □ □ □ □ □ □ □ □ □ □ □ □	7	클린밴치, 후드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작동하는가?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취, 생쥐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있는가?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취, 생취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있는가? □ □	8	동물실험실 안에 음식과 음수가 있는가?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 □ □ □ □ □ □ □ □ □ □ □ □ □ □ □ □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 □ □ □ □ □ □ □ □ □ □ □ □ □ □ □ □ □ □	9	실험실(바닥, 테이블 등 일반적 환경)은 깨끗한가?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 □ □ □ □ □ □ □ □ □ □ □ □ □ □ □ □	12 폐기물 보관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 □ □ □ □ □ □ □ □ □ □ □ □ □ □ □ □	10	시기에 적절한 해충방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취, 생쥐 24시간)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 있는가?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취, 생쥐 24시간)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 있는가?	11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가?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 있는가?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 🗆 🗍 있는가?	12				
해명	해명	13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절차가			
		H명				
	······································		·······			

【별지 제8호 서식】(제9조제7항 관련) <제정 2018.12.31.>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위원회 승인번호							
과 제 명	(국문)						
변경 승인 여부	□ 없음	□ 있음 (변경	승인번호 :)			
연구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책임자							
동물실험 수행자							
내 용	승역	민사항	싵	l제 사항			
실험 기간							
동물 종 (계통)							
동물품질등급							
총 사용 마리수							
고통등급							
안락사방법							
그 밖의 사항							
상기 동물실험에 대해 종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Ç	연구책임자		(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년) 통보서

						(앞쪽)				
	명칭									
동물실험 시행기관	주소									
시행기관	전화번호									
	등록번호									
	명칭									
동물실험 주소										
윤리위원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ヒロロテロコ	케이(크레스) 기	റചി	기레크 페10 코페(라 미 키 0) HJ	기케그런 케이드구리 때	7) 도요				
1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 日	시앵큐식 세25소에 따	다 중室				
실험윤리위원회	의 운영 실적을 아	·래와 >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위원 현황 (
성	명		전문분야		소속					
0 010171 1171	=1.4 (-1)									
2. 위원회 개최										
1	물실험 실태 확인	'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다. 실험동물	·의 생산·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	1 난 4	후 해당 동물의 처리	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4. 위원회의 동	물실험계획의 심의	의 및	승인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		미승인 건수					

210mm×594mm[백상지(80g/m²)]

(뒤쪽)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정도	Grade A	Grade B	Grade C	Grade D	Grade E	합계	종별 총계
동물 종	<u> </u>	Grade A	Grade D	Grade C	Grade D	Glade L	(C+D+E)	(B+C+D+E)
	마우스							
설	랫드							
치	기니피그							
류	햄스터류							
π	기타							
	설치류							
	토 끼							
원	원숭이류							
숭	(영장류)							
0	원숭이류							
류	(비영장류)							
	개							
	고양이							
포	미니피그							
	돼지							
유	소							
류	염소							
	기타							
	포유동물							
조류	조류(닭)							
<u>π</u>	기타 조류							
파 충 류								
양 서 류								
0								
	· 척추동물							
	기 타							
	총 계							

Grade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Grade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시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Grade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

Grade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Grade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 되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① 항목 1. 의 전문분야의 경우,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기타 전문가(세부영역)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항목 3. 의 경우,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한다)